



바른사회시민회의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

@FactBrief

CUBS FACT BRIEF | 2016년 4월 8일 | 발행처 바른사회시민회의 | 발행인 전삼현 | www.cubs.or.kr

<공직선거법 바로알기 시리즈⑤>

단체 회원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¹⁾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이옥남)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가능한 단체의 회원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대략 7가지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및 문자메시지 둘째, 전화 셋째, 선거사무관계자 또는 자원봉사자로 참여 넷째, 선거운동용 홍보물에 지지·추천사 게재 다섯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답에 참여 여섯째, 거리에서의 행진·인사·연호 일곱째, 공개장소에서의 지지·호소다.

1.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및 문자메시지

1) 인터넷 홈페이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할 수 없다.

각급 선관위 또는 후보자는 선거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선례를 살펴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선거일제외) 자유게시판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특정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표시를 그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선거일에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1) 본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의도선거지원단에서 발행한 『단체의 선거운동 안내』(2016. 2)를 요약 발췌한 것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낙천·낙선자를 결정하여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해당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특정 정당·입후보 예정자에 관한 지지·반대를 표현한 동영상을 게시할 수 있고, 포털 또는 일반사이트에서 댓글을 통해 후보자의 홈페이지의 URL을 게시할 수 있다. 당원이 자신의 개인 블로그 등에 소속 정당의 정당명·로고로 구성된 통상적인 배너를 게시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도 할 수 있다.

반면, 누구든지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후보자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선거법에서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게시·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에 후보자 사칭 등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관계자 외에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금품 등을 제공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약속을 하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유료광고를 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선거일에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인 향우회·종친회·동창회·계모임 등 개인 간 사적모임이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그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2) 전자우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전자우편을 이용한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기타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선거운동정보 작성형태에 대하여 제한은 없으므로 문자 뿐만 아니라 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 전자우편으로 전송가능한 모든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전송횟수는 제한이 없다. 후보자 외에는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전자우편에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으나, 후보자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 표시
- ②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
- ③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할 수 없음

④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인 조치를 할 수 없음

⑤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⑥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없음

주요선례를 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특정 후보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글이나 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운동내용을 리트윗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이외의 자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함)²⁾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 조직 및 구·시·군 조직 포함)의 대표자, 법제38조 제2항에 따른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자동 동보통신(同報通信)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다.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않는다.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 발송시에는 ‘선거운동정보’와 ‘수신 거부’ 표시 의무가 없으나, 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 표시
- ②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전화번호
- ③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

주요선례를 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문자메시지의 배경 서체의 크기·색깔 등을 조정하여 발송하는 행위,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중 무료전송서비스를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 「농어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과 그 중앙회,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 및 지방 공단 등도 해당

이용하여 20인 이하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또한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제메시지를 20명씩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선거운동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반면, 누구든지 선거일에 선거운동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불가하다.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이외의 자가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문자가 아닌 이미지 파일이나 정당 로고를 전송하는 행위도 불가하다.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이 아닌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하여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인 이하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해당한다. 문자메시지 발송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인 이하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자동동보 통신횟수에 포함된다.

2. 전화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할 수 없다.

선례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반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전화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거나 지지를 권유·유도하는 행위, 가정집, 기타 사무실에 이미 설치된 전화 이외에 새로이 전화를 가설하여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3. 선거사무관계자 또는 자원봉사자로 참여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이하 ‘선거사무장 등’)·대담토론자 등으로 선임되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주민자치위원회 또는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장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선거운동방법으로는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어깨띠나 옷·표찰·수기·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이 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운동 자원봉사자³⁾로 참여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으로는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3)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란 선거운동기간 중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시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으로부터 지정되어 연설·대담을 하는 행위,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1인이 되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있다. 또한 선거운동을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정당의 사무소·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에서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관한 사무처리를 보조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그 제공의 의사표시, 그 제공을 약속하거나 지시·권유·요구·수령하거나 알선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는 1만원 이하의 식사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

주요선례를 살펴보면, 선거운동기간 중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집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를 증설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 또한 선거운동자원 봉사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다만, 선거일이라도 선거운동자원봉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없이 단순히 투표 인증샷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반면,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자원봉사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자원봉사자에게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을 하게 한 후 자장면 등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는 위법이다.

4. 선거운동용 홍보물에 지지·추천사 게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및 개인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벽보, 선거공보 등 법정 선거홍보물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명의의 지지·추천사 게재를 할 수 있다.

주요선례를 보면, 법제57조의3 제1항제2호에 의한 정당의 당내경선후보자 홍보물에 당해 정당의 당원으로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는 제3자가 경선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후보자의 선거벽보·선거공보에 지지글을 게시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대표명의로 선거벽보·선거공보에 지지·추천의 글을 게재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5.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참여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으로부터 연설원으로 지정된 사람은 법 제79조에 의해 공개장소 연설·대담에 참여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의 대담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연설·대담 시 선거사무원이나 일반 선거구민이 자발적으로 로고송을 함께 부르거나 율동을 하는 행위,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

사무원이 아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출연하여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녹화기를 방영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반면,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으로부터 연설원으로 지정된 사람이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대답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대답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답의 통지를 위해 호별방문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6. 거리에서의 행진·인사·연호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위해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 후보자 포함 1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⁴⁾,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는 가능하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답에서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달아 소리를 지르는 경우에는 인원의 제한이 없다.

주요선례를 살펴보면,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를 포함한 3인이 1조가 되어 공연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단순히 장구와 북을 치면서 거리를 행진하거나, 기타와 휴대용 봉고를 치면서 밤에 공중이 출입하는 장소에서는 단순히 한 바퀴 돌고 나가는 행위는 가능하다. 선거운동원 6명이 한주가 되어 선거구 13개 동을 순회하면서 후보자가 연설하는 유세차 옆에서 음악에 맞춰 단체울동을 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반면, 후보자가 선거연설을 끝내고 청중들에게 부정선거확책주장을 하면서 자기를 따를 것을 외치자 이에 호응하여 박수를 쳐서 군중심리를 이용하여 군중들로 하여금 부화뇌동하여 가두행진을 하도록 선동을 하고 연호를 하면서 가두행진을 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연설·대담용 차량이 아닌 트럭에 후보자의 선거운동 로고송인 ‘다함께 차차차’, ‘뽀뽀뽀’ 등의 개시곡이 녹음된 녹음기를 장착한 다음 확성기를 통해 가두방송을 한 행위, 자원봉사자 후보자의 연설 중에 성명을 알 수 없는 50여명에게 “불꽃놀이 용품에 불을 붙여서 흔들어 달라”면서 불꽃놀이 용품을 나누어 주고, 이들은 불꽃놀이 용품에 불을 붙여 흔들면서 후보자의 이름은 연호하게 한 행위도 위법으로 판명되었다.

4) 이 경우,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않음